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21
----------	------

제출연월일: 2020. 4. 29.

제출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공유물품 대여 사업 운영 근거 마련으로 공유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 나.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수 확대와 중구 소속 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하여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물품의 대여기준(대여료, 대여 제한 및 변상) 신설(안 제11조의2)
- 나.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 수 확대 : 10명 이내 → 15명 이내
(안 제14조제1항)
- 다. 당연직 위원에 공유경제 관련 업무 담당 국장 추가(안 제14조제3항)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17083호, 2020. 4. 16.)
- 라. 입법예고: 2020. 3. 26. ~ 4. 16. / 의견 없음
-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유물품”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장소에 비치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공유물품의 대여 등) 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대여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물품 등에 대한 대여료를 물품가액의 5퍼센트 이내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품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 경우
2. 물품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대여기간이 경과하고도 물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④ 대여자는 물품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동일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물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물품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직”을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유경제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중구의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공유물품”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장소에 비치한 물품을 말한다.</u></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u>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u><신설></u></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u>구청장</u>-----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2(공유물품의 대여 등) ① <u>구청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유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대여 할 수 있다</u></p>

② 구청장은 물품 등에 대한 대여료를 물품가액의 5퍼센트 이내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물품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품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미풍약속을 저해한 경우
2. 물품을 대여 목적 외로 사용한

제1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그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3. (생략)

④ ~ ⑥ (생략)

경우

3. 대여기간이 경과하고도 물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④ 대여자는 물품을 훼손·분실하였을 경우 동일물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동일물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물품대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4조(구성 및 운영) ① -----
----- 15명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공유경제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
-----.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중구의원

2. 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 차.(생략)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
경제활성화위원회 위원수 확대, 공유물품의 대여기준 마련 등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 많은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3. 작성자

- 소 속: 경제산업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보
- 이 름: 이선희
- 연락처: (052)290-3312